

『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8년 10월 12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10월 15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10월 29일

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건설과장 장 덕 수

나. 제안이유

- 2019년 7월 낙동강 체육공원 내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개장에 따라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레저활동 및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물놀이장의 목적, 정의, 위치 등(안 제1조 ~ 제4조)
- 운영, 관리(안 제5조 ~ 제6조)

- 입장료, 입장료 감면, 입장료 반환(안 제7조 ~ 제9조)
- 손해배상, 시설의 이용제한(안 제10조 ~ 제11조)
- 보험가입(안 제12조)
- 세입조치, 수입금 입금(안 제13조 ~ 제14조)
- 위탁운영(안 제15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「지방공기업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중 우

- 본 「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은

- 낙동강 체육공원 일원에 이동식 물놀이장을 설치하여 여름기간 동안 시민들이 무더위를 피하고 구미캠핑장과 연계하여 가족 중심의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
-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